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확인 의무 부과 등 》

- 진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87호)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01호)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39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5
1.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확인 의무 부과(진중오의원안)	5
2. 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민홍철의원안)	11
3.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특례 신설(남인순의원안)	18
※ 참고자료	32
1. 「아동복지법」상 과태료 부과 기준	32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미성년후견인 소송 현황	33

I. 개요

1. 진중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29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진중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5.

(3) 회 부 일 : 2025. 9.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등의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유괴 등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2.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40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홍철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0. 1.
- (3) 회 부 일 : 2025.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여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3.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353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0. 13.

(3) 회 부 일 : 2025. 10.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류로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실상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있음.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입양 대상 아동의 경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이 됨.

그런데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경우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없어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 등을 청구하는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대리권 행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의 유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Ⅱ. 검토 의견

1. 아동보호구역 CCTV 실시간 확인 의무 부과

(진중오의원안 제32조제3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Closed-circuit Television)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u>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야 한다.</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 사항

- 최근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약취·유인 범죄는 총 1,084건에 달함.

<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 >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8월 말
건수	193	222	260	236	173

자료: 경찰청(김대식의원실 보도자료, 2025. 10. 14.)

- 특히, 피해자 연령 분포에서는 12세 이하가 74.9%로 가장 약취·유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세 이하는 13.4%, 20세 이하는 9.4%로 나타남.
-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자체가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 관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취·유인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5년 10월 현재 아동보호구역은 서울·부산·인천 등 11개 시·도에 총 1,071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설치된 CCTV는 9,847대로 파악되고 있음.

< 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CCTV >

(‘25년 10월 기준)

시도	계	시설별(개소)				CCTV 설치 대수
		도시공원 (1호)	어린이집 (2호)	초등학교 특수학교(3호)	유치원 (4호)	
서울	297	143	16	131	7	1,209
부산	200	7	52	123	18	5,393
대구	27	19	2	6	0	171
인천	14	0	5	6	3	14
대전	147	66	32	23	26	147
경기	67	9	7	51	0	1,760
강원	33	31	1	1	0	56
전북	104	35	19	34	16	245
전남	114	21	38	52	3	508
경북	25	25	-	-	-	138
경남	43	20	-	23	-	206
계	1,071	376	211	450	73	9,847

* 아동보호구역 미지정 시도(6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제주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에 따라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365일 4조
3교대 등의 근무방식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5(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는 통합관제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개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연계·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 ④ 통합관제센터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 관제시스템의 도입·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로,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별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나, 광주·대전·세종·제주 등 4개 지자체는 광역 단위로 1개씩 운영하고, 대구의 경우 9개 구 중 6개 구는 통합관제 체제로, 나머지 3개 구는 별도로 운영되는 체제임.

< 시·도별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26	16	4	11	1	1	1	5	3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8	11	15	14	22	22	18	1	217

자료: 행정안전부

□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인프라로서 사람과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AI 기반 지능형 CCTV¹⁾ 확충과 함께 적정 관제인력 확충도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제인력 산정은 1인당 50대의 모니터를 기준으로 관제비율을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1인당 평균 관제 대수는 477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1)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능형 CCTV 설치는 33% 수준으로, 2025년 말까지 57%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임.

< 시·도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1인당 관제대수 >

(단위 : 개, 명, 대)

시·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연계 CCTV 대수	1인당 관제대수
계	4,093	650,423	477
서울	387	114,514	887
부산	282	23,654	252
대구	169	16,694	296
인천	190	26,083	411
광주	82	10,972	401
대전	63	8,907	424
울산	62	13,173	637
세종	25	4,267	512
경기	653	188,071	864
강원	208	22,991	332
충북	176	24,677	420
충남	282	37,836	402
전북	185	22,611	366
전남	413	32,947	239
경북	468	42,011	269
경남	362	45,002	372
제주	86	16,013	558

자료: 행정안전부, 2024. 12. 31. 기준(일반적으로 3교대 근무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CCTV 대수/ 관제인력*3으로 계산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 관제를 실시 중이므로 「아동복지법」에 실시간 관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적다는 입장임.

2. 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민홍철의원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보호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 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생략) <신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 1의5.</u> (생 략) 2. ~ 4. (생 략) ④ (생 략)	<u>1의2.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u> <u>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u> <u>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u> <u>하거나 방해한 자</u> <u>1의3. ~ 1의6.</u> (현행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5까지와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의2에서는 지자체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²⁾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따른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비율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 까지 약 30~40%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이들에 대하여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 복귀 전 작성했던 양육계획서 및 가정복귀 점검표 등을 참고하여, 원가정 복귀 후 1주 이내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 추가 1회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및 6개월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1년에 4회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보호자³⁾, 가족관계 등을 점검하고 아동 및 보호자 면담⁴⁾ 등을 수행하게 됨.

- 2)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3) 거주상태, 기초생활 수급 여부

- 4) 아동: 보호자 양육태도, 학대 의심상황, 아동 외 가족 간 갈등,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자립지원 점검/ 보호자: 아동과의 관계, 아동양육의 어려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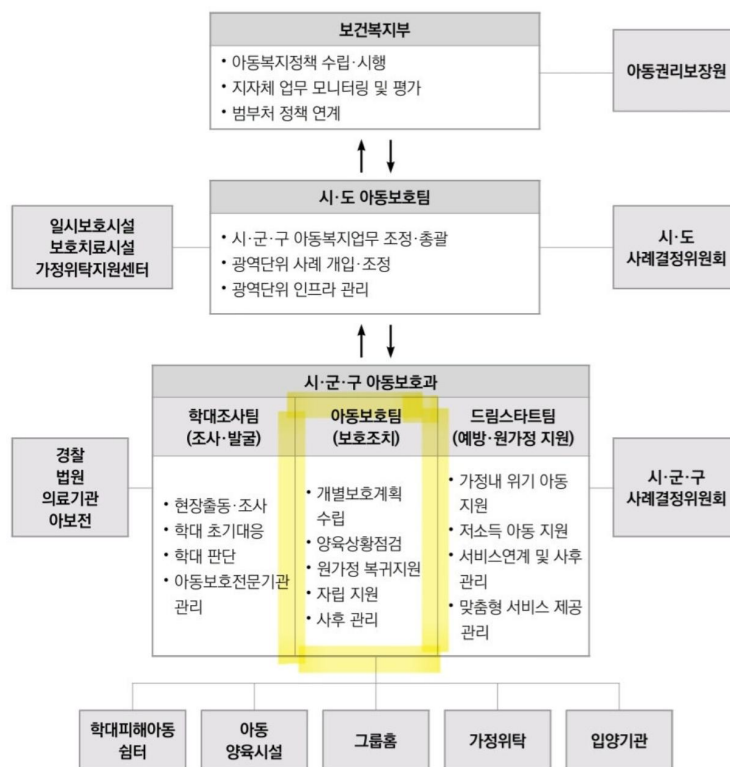
< 보호대상아동 사후관리(가정방문) 현황 >

(단위: 명, %)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8월
보호종료	871	2,423	2,237	2,159	1,135
원가정 복귀	355	809	728	583	330
비율	41	33	33	27	29
가정방문 사례관리*	-	3,163건	3,756건	3,274	1,880

* 행복e음 시스템 추출 시점에 따라 수치 변동 가능,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 이전에는 별도의 사례관리 구분 안 되어 '21년 사례관리 건수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 추진체계 >



출처: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하지만, 이러한 지자체의 사후관리(가정방문)와 관련하여 가정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2024년 3건, 지도·관리 거부·방해가 2023년 7건, 2024년 8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종료 후의 사후 관리와

같은 거부·방해 금지 규정(「아동복지법」 제28조제3항) 및 위반 시 과태료(「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3) 규정이 없어 보호 대상아동 가족의 협조 유도 등 그 실효성 확보에 일부 한계도 있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사후관리 거부·방해 행위 현황 >

(단위 :건,명)

연도	사후관리 현황				
	사후관리 대상자 (아동수)	가정방문 거부 건수		지도·관리 거부 건수	
		거부 (방문거부)	방해 (폭력/폭언)	거부 (관리거부/비협조)	방해 (폭력/폭언)
계	-	3	-	16	1
'23년	2,374	-	-	6 (대상아동 5명)	1 (대상아동 1명)
'24년	2,352	3 (대상아동 6명)	-	8 (대상아동 8명)	-
'25.9월	1,434	-	-	2 (대상아동 2명)	-

자료: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종료 후의 사후관리 >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생략)

1의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한편, 상기한 바,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재학대나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⁵⁾ 등에는 반드시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특히 현행법 제28조에 따른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와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종료 후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비교하여 보면,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는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반면, ‘보호종료 후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인력(아동보호전문요원)이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므로 각 사후관리는 주체, 대상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이므로, 보호대상아동에 학대피해아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이 중복될 수 있고, 시기 또한 원가정 복귀 이후이므로 겹치는 측면이 있음.

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비교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법적 근거	제16조의2	제28조
실시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가정방문 등을 하게 함.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실시시기	원가정 복귀 후 1주 이내 가정방문, 1년간 4회 실시	원가정 복귀 후 1주 이내 가정방문, 최소 1개월 이상 가정방문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사후관리 운영 시 대상 아동 및 가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강구와 함께,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사유는 특별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아동학대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임에도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보호대상아동 가족의 협조 의무 위반 시 ‘아동학대 종료 후 사후관리 협조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300만원)와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는 필요해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학대·재학대 예방, 양육환경의 체계적 점검 등을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가족의 사후관리 협조 의무 및 거부 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후견인 특례 신설

(남인순의원안 제15조의6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가정위탁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원에 의해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지자체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아동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면서, 위탁 가정의 양육자 또한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1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6(위탁 아동을 위한 특례) 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 아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 가정에 위탁된 때부터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된다.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위탁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아동의 일상거소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위

2. 건강 상태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서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위탁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탁 아동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아동, 위탁 아동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위탁 아동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고 하는 경우

2. 「민법」 제9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 다만,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라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정지된 경우 위탁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위탁 아동의 건강 및 복

리 상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 중인 사람(이하 “위탁 양육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양육자는 제1항에 따른 후견인과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후견인 및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위탁 아동의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위탁 아동을 위하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 아동에게 오로지 이익이 되는 행위

4. 그 밖에 위탁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 이 경우 위탁 양육자는 행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성년 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가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탁 양육자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탁 양육자 및 위탁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된 자는 후견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주요 검토 사항

□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 집단시설의 심리적·환경적 한계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위탁가정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기할 수 있고, 가정과 유사한 안정적인 보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친부모와의 가족 재결합이라는 목적도 포기하지 않는 장점을 가진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바⁶⁾, 2024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율은 35.7%에 이르고 있음.

< 2023~2024년 보호조치 유형 >

(단위: 명, %)

연도	합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일시 보호 조치
		소계	양육 시설	자립 지원 시설	보호 치료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일시 보호	기타	소계	가정 위탁	입양 대상 아동	
'24	1,978	753 (38.1)	474 (24)	-	15 (0.8)	225 (11.4)	-	39 (19.7)	830 (42)	707 (35.7)	123 (6.2)	395 (19.9)
'23	2,054	801 (39)	524 (25.5)	-	13 (0.6)	222 (10.8)	-	42 (2.0)	945 (46)	783 (38.1)	162 (7.9)	308 (15)

□ 아울러 가정위탁의 세부 비율을 살펴보면 친인척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 대다수(아동 수 기준 86.8%)를 차지하고 있음.

6) 윤우일, 「가정위탁에서 후견제도 활용의 한계」, 『서울법학』 제28권 제1호, 2020, p.76.

< 24년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24.12월말 기준) >

(단위: 명)

구분	계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친인척 외)		전문가정위탁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위탁보호현황	7,637	9,408	6,553	8,167	875	771	303	354

자료: 보건복지부

□ 현행 「민법」과 「아동복지법」은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을 규정하고 있어, 친권 상실·정지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 청구 시 위탁가정 부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소극적이며⁷⁾, 친권 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더라도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⁸⁾ 그 기간 동안 위탁아동 보호 및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23년)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기간 >

(단위 : 건)

구 분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41	63.1
3개월 ~6개월 미만	14	21.5
6개월 ~1년 미만	10	15.4
계	65	100.0

7) 법적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 친권 상실 선고 등 청구 사유의 포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책임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pp.38~43.), 다른 청구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설령 찾는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경우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음. 김상용, 「위탁아동의 친권과 후견」, 『중앙법학』 제19집제4호, 2017. 12, p. 221.

8) 한국가정법률사무소의 2021년 위탁가정 후견인 선임 지원 사례에서도 3~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짐. 상기 사례 외에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연구수행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7. 8.)에 따르면, 서류 접수부터 법원의 심사와 판결까지 약 6개월 정도(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전 서류 준비 기간이 일반적으로 약 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서류준비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법원 판결까지 약 7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친권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후견인 미선임 아동도 상당한 가운데 위탁가정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가정위탁 후견인 선임 관련 현황('25.10월 기준) >

(단위: 건)

후견인 필요			후견인 미필요 (친권자 존재)	18세이상 (보호연장, 재보호 아동)	합계
후견인 선임	미선임	소계			
1,605	336	1,941	4,064	3,180	9,185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의 후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위탁 가정 보호자에게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호조치 유형에 따른 차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참고로 보호조치 유형에 따른 차이 개선과 관련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

(제15조의6제1항)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까지 시장 등이 후견인이 되도록 명시한 것과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음.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 한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최대 1년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에서 아동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음.

□ 이러한 개정 「아동복지법」(김미애의원 대표발의,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에 비하여 아동 보호의 폭이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 금번 개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을 수용하는 경우, 개정 「아동복지법」(김미애의원 대표발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아동 보호 체계의 수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김미애의원안과 금번 개정안 비교 >

구분		김미애 의원안	금번 개정안
후견인 선임 필요 대상자		가정위탁 아동	가정위탁 아동
후견인	선임 요건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 아동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 아동
	자격	위탁 부모 (위탁 부모 동의 시)	지자체장 (당연 후견인)
	종료 요건	1년 이내 (임시)	민법상 후견인 선임
	권한 범위	제한적 법정대리권	후견인 권한 전반(법정대리권)
친권의 공백 가능성		일부 공백 (임시 후견인으로 1년간 제한적 범위 행사)	공백 없음 (지자체장 당연 지정)
후속 조치		임시 후견인 연장 또는 공식 후견인 지정	공백이 없음에도 법정 대리권 추가 보호 ※ 후견인의 후견권에 우 선하여, 위탁 부모가 일부 제한적 범위 행사

자료: 보건복지부

- 첫째, 안 제15조의6제1항에서는 법원에 의하여 새로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시·도지사는 제외하되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면서, 이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 아울러,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과의 관계에서도 이견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 및 법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동 조문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위탁보호결정으로 자동적인 후견인 지정 및 친권정지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된바,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 부담이 커져 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둘째, 안 제15조의6제3항에서는 ‘위탁 아동의 일상거소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위’,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위탁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친권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안 제15조의6제4항에서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아동의 생명 등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으로 하여금 「민법」 제922조의2⁹⁾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친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가정법원 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에 따른 시간 지연으로 아동 보호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음.

9)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아울러,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에 대한 재판 청구와 관련하여, 재판 청구의 사전 요건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구체화하여 분쟁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도 있겠음.
- 그 외, 아동의 해외 이주 등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성년 후견인인 지자체장은 친권자를 대리하는 자임에도 다시 친권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음.
- 셋째, 안 제15조의6제5항에서는 후견인이 된 지자체장은 위탁아동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신병원 등에 격리하는 행위의 경우 안 제15조의6제3항에서의 친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에는 포함될 수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

< 개정안의 친권자의 동의 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

친권자의 동의(안 제15조의6제3항)	가정법원의 허가(안 제15조의6제5항)
1. 위탁 아동의 일상거소를 해외로 이동시키는 행위 2. 건강 상태의 유지 또는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로서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위탁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한 재판 ¹⁰⁾ 청구	1. 위탁 아동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고 하는 경우 2. 「민법」 제9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외)

10) 「민법」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 넷째, 안 제15조의6제7항에서는 위탁 아동 보호자에 대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권한 범위, 권한 행사 기간 등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개정 「아동복지법」(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내용과 유사함.

< 개정 「아동복지법」(김미애의원 대표발의)과 남인순의원안 비교 >

	개정 「아동복지법」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남인순의원안
권한 범위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위탁 아동의 건강 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위탁 아동을 위하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위탁 아동에게 오로지 이익이 되는 행위 4. 그 외 위탁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미성년후견인에게 통지)
권한 행사 기간	최대 1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있는 경우 연장)	제한 없음

□ 다만, 미성년 후견인인 지자체장은 친권자를 대리하는 자임에도 별도로 위탁 아동 보호자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 양자 간에 소통 등에 있어 의견 불일치 등의 문제로 아동 보호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도 필요해 보임.

□ 나아가 법원에 의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어지는 경우, 선임된 후견인 과도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 양육자에

대한 권한 부여는 법률에 의한 후견인 선임 절차까지만 인정하는 등 한시적 권한 부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친권 공백 시 가정위탁 아동의 법정 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법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러한 정책 흐름 하에 가정위탁 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된 범위의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이 2025. 10. 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금번 개정안 심사 시 가정위탁보호자와 후견인인 지자체장과의 관계 등 개정 「아동복지법」과의 관계 정리, 법원 및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유형에 따른 후견 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상 후견인 부분을 통합하여 하나로 규율하는 대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1

아동복지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2	150	300
나. 법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1호	500	1,000
다.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3('21.6 시행)	150	3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4('21.6 시행)	150	300
마.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법 제75조제3항 제1호의5('21.6 시행)	150	300
바. 법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2항	250	500
사.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1항제2호	500	1,000
아.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2호	150	300
자.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3호	150	300
차. 법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75조제3항제4호	150	300

참고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미성년후견인 소송현황

○ 사건별 분류

(단위: 건)

구 분	건수
개명	1
미성년후견인 변경	1
미성년후견인 선임	16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허가의 취소	1
상속포기	1
성과 본의 변경	9
임시후견인 선임	1
채무부존재 확인	2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34
특별대리인 선임	11
계	80

○ 소송 사유

(단위: 건)

구 분	건수
행정 처리상의 어려움(양육 안정성)	59
정체성 혼란, 위축	12
친권남용	9
계	80

○ 소송 현황

(단위: 건)

구 분	건수	비율
진행중	15	18.7
종결	65	81.3
계	80	100.0

○ 소송 기간

(단위: 건)

구 분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41	63.1
3개월~6개월 미만	14	21.5
6개월~1년 미만	10	15.4
계	65	100.0

○ 소송 결과

(단위: 건)

구 분	결과				승소율 ³⁾
	승소	패소	취하	기타 ⁴⁾	
개명	1	-	-	-	100.0
미성년후견인 변경	1	-	-	-	100.0
미성년후견인 선임	10	-	4	-	100.0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3	-	-	-	100.0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허가의 취소	1	-	-	-	100.0
상속포기	1	-	-	-	100.0
성과 본의 변경	9	-	-	-	100.0
임시후견인 선임	1	-	-	-	100.0
채무부존재 확인	2	-	-	-	100.0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16	-	4	1	100.0
특별대리인 선임	10	-	1	-	100.0
계	55	0	9	1	100.0

3) 승소율 : {(승소)/(승소+패소)}×100

4)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 이송 1건